

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47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조문 및 내용 정리를 통하여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관직 및 자구수정 (부지사 → 행정부지사, 다음 각호의 → 다음 각호의 1의)
- 단서조항 삭제 (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)

첨 부

-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부지사”를 “행정부지사”로 한다.

제7조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8호제1항중 “각호의”를 “각호의 1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)①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충청북도 부지사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4조(구성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 행정부지사....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의결정족수)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.</p>	<p>제7조(의결정족수)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(단서삭제)</p>
<p>제8조(위원의 해촉)①도지사는 다음 각호 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-3.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의해촉)①.....</p> <p>..... 각호의1의.....</p> <p>.....</p> <p>1.-3.(현행과 같음)</p>